

IV. 반론보도청구제도와 정정보도청구제도

1. 개념구별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구 언론기본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의 내용이 잘못된 보도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정” 보도인지 아니면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보도내용에 대한 기사관계자의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결국 반박문 게재를 요구하는 반박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상의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판례의 태도도 이에 따라 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과거의 용어상의 혼동으로 인한 개념구별의 곤란성으로 인해 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 하면서도 진술주체를 청구인으로 하거나,³³⁾ 또는 반대로 제목은 ‘반론 보도문’으로 하면서도 진술주체를 언론사로 하는 경우³⁴⁾ 등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개념상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양자 모두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 기초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의 자유에 내포되어 있는 액세스권(access)과 언론자유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³⁵⁾

그러나 양자는 그 개념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그 보도에 관련된 피해자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반론”의 경우에는 보도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언론보도가 사실인 경우에도 그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반론이 가능하다),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므로 보도가 명백히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중재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게 될 것이다.

3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1996. 3. 26, 95카합1209은 “... 그러나 (청구인이)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바로 잡습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7. 10. 30, 97카합3509은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5) 강현중, 앞의 글, p.7 ; 안상운,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년 가을호, p.53.

또 반론의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자의 그 주장내용을 게재하여 주는 것이므로 반론문의 작성주체는 반론권자 자신이고 언론사가 아니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정간법 제16조 제5항).

한편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언론보도를 언론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정의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은 정정을 주장하는 언론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증이 수월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입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승소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질상의 차이 때문에 “반론”의 제도는 특별법인 정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한 반면에, “정정”의 제도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중재위원회를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간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론권 이외에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한 중재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만 반론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그 사전절차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정보도의 청구를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³⁶⁾

2. 양 제도의 세부적인 구별

반론보도청구제도와 정정보도청구제도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구별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36) 김대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전망」,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6년 가을호, pp. 75~76.

<표 4> 정간법상 반론보도청구와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비교³⁷⁾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근거법률	· 정간법 제16조 내지 제20조 · 방송법 제41조, 제42조 ·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 민법 제750조 내지 766조
관할	· 언론중재위원회/법원 ·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법원	· 법원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적
당사자	· 청구인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당사자적격의 확대) · 피청구인 : 정간물 등을 발행하는 기업	· 원고 : 불법행위를 당한 자 · 피고 : 기자, 발행인, 편집인 및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 법원에 제소
요건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여부는 불문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발생(인격권 등 침해) · 인과관계의 요건이 있어야 함
면책사유	청구된 반론보도가 ·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때 ·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국가 등 공개회의에 관한 사실기사일 때	·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사실의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
심리	· 중재절차에의 출석의무 · 불출석시 : 신청인(1회) - 중재신청철회 피신청인(2회) - 합의간주 · 법원에 심판청구시에는 가처분절차 준용	·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주장과 입증의 필요)
구제형식	· 중재성립시 : 반론보도문 게재 ·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시 : 반론보도문 게재 · 금전배상은 불가	· 손해배상의 지급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 · 반론문 게재도 가능
기한(제척기간)	·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소해야 함(민법 제766조)
불복	· 중재 불성립시 법원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	· 판결에 불복시에는 항소 또는 상고
집행	· 간접강제집행(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 · 법원의 반론보도게재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배제됨	· 간접강제집행 · 집행정지 가능
가처분신청여부	· 반론보도 신청과 별도로 가처분신청 불가	· 제소에 앞서 보도금지가처분 등 신청 가능(민사소송법 제714조)

V. 맺는 말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최대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37) 안상운, 앞의 글, p.57.